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2219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정미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민

변론 종결2023. 8. 9.

판결 선고2023. 9. 6.

##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3.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1,443,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147,9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2019. 12. 16.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원고에게 29,033,633원과 그중 19,940,796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지급명령은 2020.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E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2022. 5. 13.을 기준으로 39,410,763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2018. 8. 23.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원고에게 5,774,053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지급명령은 2019. 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E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2022. 5. 13.을 기준으로 12,033,217원이다.

다. E의 아버지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0.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E, 피고 B, 피고 C이 그 상속인들이다.

라. E과 피고들은 2020. 3. 2. E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2. 8. I 2337분의 1169 지분, J, K 각 2337분의 58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1,414,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1997. 9. 12.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4. 9. 13.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2018. 10. 15. 채권최고액이

292,800,000원으로 변경됨), ③ 2011. 5. 9.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7. 7. 19.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7. 3.에, ②~④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2. 8. 각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E은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등기정보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E이 이 사건 지분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414,000,000원에서 위

①~④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633,800,000원(= 70,000,000원 + 292,800,000원 + 91,000,000원 + 180,000,000원)을 공제한 780,200,000원 중 E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73,377,777원(= 780,2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443,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147,9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이 이미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의 생전에 E뿐만 아니라 피고들도 특별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내역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는 E이 망인으로부터 얻었다는 특별수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혁**

별지